

**지혜복
교사 투쟁
600일**



**성폭력 사안
투쟁에 대한**



**공개
토론회**

"전교조 서울지부에 토론회공동 주치를 요청합니다."

일시 : 2025년 9월 5일(금) 18시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최 :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순서

발제1. A학교 투쟁의 경과와 과제 (백종성, A학교공대위)	1
토론1. 교육노동자 지혜복의 투쟁이 정의롭지만 힘든 이유 (산양, 교육노동자현장실천)	23
토론2. 학교가 침묵하는 사이, 아이들은 무너졌습니다 (용은중, A학교 관련 학부모)	29
토론3. 지혜복도 정근식도 돌아가자! (성령, 전국청소년노동조합)	32
토론4. 구조적 성차별 속에서 A학교 투쟁의 의미와 과제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34
첨부. A학교 관련 양육자 메시지 모음	35

A학교 투쟁의 경과와 과제

백종성 (A학교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1. A학교 성폭력과 2차가해

1)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2023년 5월 16일, 지혜복 교사는 A학교 내에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음을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인지하고, 학교 측에 보고하며 해결에 나섰다. 성폭력 피해는 너무도 심각했고 일상적이었다. 다음은 2023년 12월 22일 서울시 교육청 <조사결과보고서>에 담긴 피해학생들 진술의 극히 일부이다.

- ○○○이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나 교사 앞에서는 그러지 않는 척을 하고 있음. 또한 여자 학생들의 예쁜 순위, 몸매 순위를 매김. (○○○ ○○○ ○○○이 시키는 경우가 많음) ○○○은 상대방이 보았을 때 불쾌한 행동을 지속함. 아울러 여자 학생들이 본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함. 이 외에도 후배와 남학생들의 이름을 소리 치면서 부르거나 뛰어가서 안기는 일이 있고, 학급 내 자리를 바꿀 때 계속해서 여학생과 앉으려고 함
- 여자 학생들의 가슴과 몸매 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SNS DM을 활용해 이상한 플러팅을 하였음. 또한 가정시간 성에 대해 학습할 때 ○○○ 자신의 생식기가 섰다는 식으로 말하였음. 이 밖에도 ○○○에게 몸매 평가를 하였음
- 역사 수업 시간이 끝나갈 즈음 ○○○과 ○○○가 자신들의 이상형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가슴 큰 여자가 좋다'면서 같은 학급 친구 2명과 자신을 성희롱함
- 몸매, 얼굴 등 여러 가지로 자신과 친구들을 깎아내리고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물건을 훔쳐 가는 등,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음. 이밖에도 장애인 친구들을 비하하고, 폭력을 가하였고, 수업을 방해함

2) 2023년 6월 이후 피해학생 신원유출과 함께 이루어진 2차가해

그러나 A학교 관리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가해자들에게 유출했다. 2023년 6월 15일, A학교 생활지도부장은 사실관계확인서에 적힌 가해 관련 학생 조사를 시작했다. 당일 조사 직후,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들에게 '생활인성지도부장이 너희의 이름을 알려주었다'고 협박했고, 피해학생들을 향한 온·오프라인 2차가해가 시작되었다.

-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년 A, B C, D학생에 대한 면담 조사를 통해 들은 2차 피해 관련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음
- B학생은 생활인성지도부장이 확인서에 목격하거나 들은 것은 빠라고 한 바 있다고 하였고, D학생은 남학생들이 알게 되어서 확인서를 작성할 때 위축되었다고 함
 - B, D학생은 ○○공원에서 남학생들로부터 "확인서를 쓰기 전에 진술서에서 너희 이름이 있는 표(서류)를 (생활인성지도부장 이) 보여줘서 알았다"고 하면서 위협을 받았다고 함

2023년 6월 16일 A학교 교장은 지혜복 교사를 교장실에 불러, '피해 학생들을 생활지도부로 불러 생활지도부장이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혜복 교사는 인권침해 우려로 적극 반대했으며, 피해학생들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6월 17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문가 긴급대책을 교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이마저 거절되

었다. 나아가 2023년 6월 19일에서 20일, 생활지도부장은 공개적으로 피해학생들을 생활지도부로 불러 3차례 이상 조사했다. 심지어 피해학생 수업시간에 찾아가 생활지도부로 오라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관리자와 생활지도 부장은 가해 관련 학생 학부모들과 소통하면서도 피해학생 학부모들에게는 일체 연락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심각한 2차가해를 당한 피해학생 1명은 ‘자신이 기재한 가해 관련 학생과 피해사실을 지워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고, 사실관계확인서 내용을 대부분 삭제하기도 할 정도였다. 이런 경과에 따라 경찰과 중부교육지원청에 신고된 가해학생은 최초 8명에서 최종 3명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A학교를 관할하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교육부 매뉴얼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A학교 관리자들을 감싸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023.9.14. 중부지원청 항의방문 당시 담당 장학사와의 대화. 화살표는 당시 임OO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부지부장 답변

3. 학생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 학생들이 입은 2차피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 추가로 학폭을 요구하면 된다.
→ 그것은 학생 피해회복 절차이고, 학교에서 학폭을 잘못 진행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 절차는 별개이다.
4. 생활부장이 가해학생에게 신고학생을 발설했다는 증거가 없고, 학교 내에서 조사 중에 신고 학생이 누설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 가해학생들이 생활부에서 조사 받고 나오자마자 신고학생이 누구인지 생활부장이 알려주었다고 가해학생들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것을 들은 학생이 여러 명이다.
5. 가해자에게 신고자를 알려주는 것은 학폭 절차 상 당연하다. 문제가 없다.
→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매뉴얼 상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

관련, 2023년 12월 22일 서울시교육청 <조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된 피해학생 양육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8. 보호자 의견청취 요지

-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A학생 보호자), ○○○(B학생 보호자)를 면담하고, ○○○(C학생 보호자)은 유선으로 의견을 청취함
- 의견청취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초기 대응에서 개인의 비밀 보장 유지가 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함
 - 가해 관련 학생에게 누구, 누구에게 이런 사실이 있다고 물어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피해 학생 보다 가해 관련 학생을 배려하는 듯한 모습이었음
 - 학생들이 6. 13.경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6. 21.경 학교폭력(전담기구추정)개최에 대한 문자 통보를 받았고, 6. 26. 경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 결정 문자를 통보 받았음
 - 부모들은 학교의 연락이 없이 아이들의 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 초기 재발방지를 원했는데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고, 학생이 위축되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도 하였음
 - 이 과정에서 들은 바로는 학교에서 남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여학생들과 말하지도, 부딪치지도 말라"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남/녀 학생들의 대립이 격화되어 다른 학생들까지 불안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함
 - 관련하여 보호자들은 2023. 7. 7. 경 학교(교장)에 의견을 들었음

- 교육을 했다는데 동영상을 보여주는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들었음
- 학생 대상 효과적인 성인지 교육과 학생에 대한 심리지원 그리고 학교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언론에 지혜복 교사의 투쟁이 알려진 후 A학교와 교육당국은 대중적 공분에 직면했다. 이에 2024년 5월 22일 A학교는 ‘사안은 공정하게 처리되었다’며 다음과 같은 가정통신문까지 발행해 지혜복 교사를 공격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A 교사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과, 그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내용으로 해당 학생은 물론 재학생 전체가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해당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학교폭력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되어 학교의 명예가 훼손되고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은 관련 법률과 행정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 본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침에 따라 학교폭력사안 접수 후 즉시 ① 가·피해 학생 분리 조치, ② 관련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통지, ③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의 절차를 거쳐 이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 본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 본교는 학교폭력 재발방지 대책으로 ① 작년 6월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3차례 실시, ② 작년 7월 남녀 학생 사이의 갈등 해소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전교생 관계회복 프로그램 실시, 2학년 인권교육 및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③ 담임교사의 수시 교육, ④ 교직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지원센터에서도 해당 사건 관련하여 올해 3월 초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권고사항이 대부분 이행되었고, 피해 학생들을 면담하여 의견을 청취한 결과 문제없이 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안정된 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 측의 노력을 확인하였습니다.

A학교가 가정통신문을 발행한지 불과 3주 뒤인 6월 18일, A학교는 성폭력 처리과정에 대한 축소·은폐, 2차가해 유발로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그것도 사건 축소·은폐와 피해학생 신원유출에 동조한 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말이다. 중부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보아도 A학교에서 벌어진 일은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A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관련 책임자 행정조치 건과 관련하여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A학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24.06.18.)하였습니다.

- 24.07.19.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민원답변서”

2. 2023년 6월 공익신고와 2023년 12월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권고문 발행

2023년 6월 29일, 지혜복 교사는 2차가해 상황을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제보했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였다. 사안을 조사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26일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적격함을 공문으로 인정하였고, 문제시정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 6. 15.경 ○○공원 인근에서 가해 관련 학생들이 피해확인서를 작성한 여학생들에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인성지도부장으로부터 신고자의 이름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생활인성지도부장 및 학교 답변으로 보아도, 사안을 조사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사이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음”

“학생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남학생들의 비아냥, 의자를 발로 차기, 인스타그램 저격 글 등으로 여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개연성이 있음”

“2023. 6. 17. 여학생 6명이 생활인성지도부실에서 확인서를 재작성하기 위해 가게 되었고, 이 중 2명의 여학생은 여교사를 포함한 생활인성지도부 교사 3인이 참여한 가운데 확인서를 재작성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생활인성지도부장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였고, 학생들이 확인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연락이나 조력은 없었음**”

○ 2023. 5. 16.경 다수의 피해 학생이 연관된 학교폭력(성희롱) 사안이 인지되었고, 2023. 5. 26.경 2학년 여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여학생 중 6명이 피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2023. 6. 13.경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고, 관련 학생들의 조사가 진행되었음

○ 2023. 6. 15.경 공원 인근에서 **가해 관련 학생들이 피해 확인서를 작성한 여학생들에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인성지도부장으로부터 신고자의 이름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생활인성지도부장 및 학교 답변으로 보아도, 사안을 조사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사이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음

○ 학생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남학생들의 **비아냥, 의자를 발로 차기, 인스타그램 저격 글 등으로 여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개연성이 있음

○ 2023. 6. 17. 여학생 6명이 생활인성지도부실에서 확인서를 재작성하기 위해 가게 되었고, 이 중 2명의 여학생은 여교사를 포함한 생활인성지도부 교사 3인이 참여한 가운데 확인서를 재작성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생활인성지도부장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였고, 학생들이 확인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연락이나 조력은 없었음**

○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접수 당시 가해 관련 학생이 8명, 피해 관련 학생이 6명이었으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자료는 가해 학생 3명, 피해 관련 학생이 7명으로 작성되었고, 학교에서는 피해 관련학생들이 2차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1차 확인서 작성 당시 신고한 5명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5명에 대해 오인 신고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중부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2023. 7. 6. 전담 기구를 재개최하였고 그 결과는 2023. 7. 7. 교육지원청에 보고되었음

그림2. 2023.12.2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학교폭력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 등 권고」

3. 지해복 교사 전보의 문제

1) 업무상 필요와 상충하는 인사보복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2010년 중학교에 적용된 이후, 사회와 역사는 독립 교과다. 즉, 교과서가 다르다. 다음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원어 추가

문서 토문

읽기 편집 역사 보기 도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종전까지 전면개정으로 이루어졌던 **대한민국** 교육 과정 개정 체제를 수시개정 체제로 바꾼 뒤 개정된 4번째 교육과정이다. **2007년 2월 28일**에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 호로 고시된 교육과정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기존의 차순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 이 아닌 2년~ 4년에 한번씩 수시로 개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8차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되었다.

특징

이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 4학년의 과학** 교과서를 새로 만들었으며,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을 늘렸다. 또한 **중학교 1학년의 수학** 교과서와 영어 교과서에서 단계형을 없애 통합하였으며, 수학은 수학과 수학 익힘책, 영어는 영어와 English Activities로 교과서를 나누었다.

무엇보다 국어, 도덕, 역사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 체제에서 검인정 교과서 체제로 변화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기존에 국가에서 한 가지 교과서만을 만들어 배포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교과서 업체에서 교과서를 개발하여 국가의 검인정을 받아 배포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에 **2010년**에 배포되는 중학교 1학년 국어, 생활국어, 도덕, 중학교 2학년 역사 교과서가 검인정을 완료하여 현재 제적이 완료된 상태이고, 2010년에 각 단위학교에 배포되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 체육 교과군의 독립으로 체육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
- 10학년 과학, 역사 과목 수업을 주당 한 시간씩 늘림
- **역사 과목을 독립하여 사회과와 분리해 시수를 매김으로써 과목의 시수 보장(7학년에서 10학년까지)**
- 일반선택교과과 심화선택교과를 통합하고, 다양한 선택교과(매체언어, 동아시아사 등)를 신설

그림3. 위키백과, 「2007 개정 교육과정」

“역사 과목을 독립하여 사회과와 분리해 시수를 매김” - 2007년 개정이 2010년부터 중학교에 적용된 후, 역사 과목과 사회 과목의 분리는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가 다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2024년 중 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은 다음과 같이 교과별 수급 상황을 전보에 있어 1차로 고려하도록 명시한다.

14조 ⑥ 교사의 전보 배치는 다음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교사의 전보는 **교과별 수급 상황**, 전 현임교의 근무 여건, 본인의 희망, 통근거리, 교육경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단, ‘통근 거리’는 해당 과목 전보 대상자 모두의 통근거리를 고려하여 배치함을의미한다.

그러나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은 2023년 12월 이후 지혜복 교사에게는 업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는 전보조치 수용을 강요했다. 명분은 소위 ‘통합교과 원칙에 따른 통합전보’다.

관련, 2023년 A학교에는 사회과 교사 2명 역사과 교사 3명이 있었으나 지혜복 교사 전보로 2024년 이후 A학교에는 사회과 교사 1명, 역사과 교사 3명이 있다. 피해학생 양육자가 증언했듯, 이는 역사과 교사가 사회를 가르쳐야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해당 학교의 사정을 알고 말씀드립니다. 2023년에는 2명의 사회과 교사, 3명의 역사과 교사가 있었으나 **2023년 사회과 교사가 전보됨으로 역사과 교사가 사회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24.05.22.)

“사회과 교과 선생님의 부족 때문인지 **저희 아이는 내용을 소화하기 위해 유료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회과목에 사교육 도움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2024.07.31.)

여전히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은 지혜복 교사 전보를 ‘통합교과 원칙’에 근거한 ‘통합전보’로서 문제 없는 전보라고 주장한다. 우선, 이는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통합전보’ 관련 법적 근거를 하등 제시하지 못한다. 법령은 다음과 같이 때문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⑤교육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 또는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지혜복 교사는 사회교과 자격증 소지자이며, 사회교과와 역사교과는독립교과다. ‘통합 전보’가 원칙이라는 교육당국 주장이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는 판례 역시 명백하다

서울지방법원 제 50 민사부 판결 사 건 : 2000카합 2513 가처분

학교가 **일방적으로 일반사회 과목 담당교사에게 국사 과목 수업을 배정하여 가르치도록 한 조치**는 관계법령 및 임용계약의 내용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교육현장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다 하여 학교의 위 조치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강변하는 ‘통합교과 원칙에 따른 통합전보’는 그 의미조차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첫째, 사회와 역사는 2010년 이후 독립교과이며 통합교과가 아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다. 둘째, 독립교과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라면, 그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 통합해 운영하는 독립교과는 이미 독립교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 성동광진, 성북강북 등 서울시 11개 교육지

원청 중 ‘통합전보’ 기준을 적용한 사례는 문제의 '중부'가 유일하다. 심지어 ‘통합전보 원칙’을 주장하는 교육당국의 유일한 근거를 만든 주무청인 성동광진지원청조차, 정작 관내 학교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2023.3.1.자 성동광진 중학교 교사 전보 전입 예상 교사수 [2022. 12. 27. 기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 전입예정교사수는 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학교구분(★: 서울형혁신학교, ◆: 전보선호학교, ♣: 전보우선지원학교)																													
연번	학교명	총계	국 어	수 학	영 어	사 회	역 사	도 덕 윤 리	과 학	체 육	음 악	미 술	독 일 어	프 랑 스 어	스 페 인 어	중 국 어	일 본 어	한 문	정 보 컴 퓨 터	기 술 가 정	가 정	기 술	진 로 진 학 상 담	전 문 상 담	특 수	보 건	영 양	비 고	
1	경수중	3		1	1																	1							
2	경일중	4		1			1					1				1													
3	광남중◆	11		1	3			1	2	1	1											1		1					
4	광양중	7		3	1		1	1		1																			
5	광장중◆	8		3					2	1	1											1							
6	광진중	2										1						1											
7	광희중	15	1	1	1		2		3	2	2	1									1	1							
8	구의중	8		2				1	1	2	1						1												
9	동마중	7		1	1	1		1													1				1	1			
10	마장중	5			1				1	2	1																		
11	무학중	7	2		2			1	1													1							
12	성수중	7	1	2					1	1											1		1						
13	성원중♣	1	1																										
14	신암중♣	3	1								1											1							
15	양진중◆	9		1	3		1			1	1					1					1								
16	육정중	9			1	1			1	1									1		1	1				1	1		
17	용곡중★♣	10	1	1	1			1	1								1				2	1				1			
18	자암중◆	7		1		1		1	1		1													1			1		
19	행당중★	3			1							1	1																
합계		126	7	18	16	3	5	7	14	12	9	5				2		3	1	8	7	1	3	1	2	2			

그림4. 사회와 역사 전보 전입 예상 교사수를 분리해 추산한 성동광진지원청

2) 역사·사회 통합전보 관련 법적 근거 전무, 이에 애초 ‘통합전보’를 개선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던 서울시교육청

아래와 같이, 교육청은 현 전보를 돌리기는 어려우나, 향후 개정을 위한 논의가 가능함을 밝혀왔다. 실제로 상위 법령과 규정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4.3.28. 서울시교육청 공문 (접수번호 2CA-2402-0935659)]

"중학교 사회/역사 분리 전보 시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매년 교원 대상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인사관리원칙 및 전보 계획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4.3.1.자 전보도 진행되었습니다. **제기하신 요청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시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24.7.10. 조희연 교육감 면담]

"통합전보에 대한 문제제기 관련, **향후 전보원칙 개선을 위한 논의 추진 가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이에 대해 공대위가 밝힌 입장은 다음과 같다.

[24.7.31. 7월 10일 조희연 교육감 면담에 대한 입장발표 공대위 기자회견]

2. 7월 10일 면담 당일, 공대위와 조희연 교육감의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격적 논의에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공대위와 면담이 늦어진 데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 공대위는 형식적 사과가 아니라 A학교 성폭력 사건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 A학교 실태의 구체적 확인 (피해학생 및 학부모 입장 반영 재조사)

- 공대위는 A학교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피해학생 학부모 입장 등이 수차례 공개된 상황에서, 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항의하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A학교 가정통신문이 발송되기도 했으며, 이는 그 자체로 가해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등 A학교 상황을 다시 파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 서울 학교 성폭력 실태 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 공대위는 A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학교 전반의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 교육과정 부조리 관련 감사 및 책임자 행정조치

- 교육청은 향후 전보원칙 개선 관련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지혜복 교사 전보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공대위는, 역사과 교사를 전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족한 사회과 교사를 전보한 것은 무엇보다 교사 수급 등 업무상 필요와 상충하는 행위로, 인사보복 이외에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2023년 사회과-역사과 통합전보 사례는 11개 교육지원청 중 중부교육지원청이 유일함을 짚으며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 지혜복 교사 전보가 업무상 필요와 상충한다는 공대위의 제기에 대한 교육청의 해명은 없었습니다.

○ A학교 사건 축소·은폐 관련 감사 및 담당자 행정조치

- ① A학교에 대한 조치: 6월 18일, A학교는 성폭력사건 축소·은폐 관련 기관경고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기관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면, 책임자들도 징계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 ②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조치: 중부교육지원청은 A학교 성폭력 사건 축소·은폐에 동참한바, 공대위는 중부교육지원청 감사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의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 교육청은 재판 등 사법 절차를 준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공대위는 재판 등 절차에 따라 당연히 확인될 것이나, 교육감과 교육청의 고유 역할과 기능이 있으며,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방기임을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던 차, 2024.7.19. 민원답변서는 다음과 같이 2009년부터 '통합교과 운영원칙'에 따른 통합전보를 일반원칙으로 격상시키기 시작했다. 이는 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징계 의사를 굳히기 시작한 흐름과 연계된다.

[24.7.19.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민원답변서"]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의 인사조치(전보)는 인사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및 초·중등 교육과정(교육부고시 2022-33호, 2022.12.22.)에 근거하고 있으며, 교사 전보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3(인사교류)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 교사 전보는 전공, 학교의 근무 여건, 지역적 특성, 거주지, 본인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매년 인사관리원칙 및 전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09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중학교 교사 전보 계획을 통해 '통합 교과 운영 원칙에 따라 '통합사회·역사·일반사회·지리'를 사회로, 공통과학·물리·화학·지구과학·생물을 과학으로 통합하여 전보 처리한다.'로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 '2009년부터 통합전보'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자료는 '2009학년도 중학교 교사 전보 계획' 단 하나다. 왜 2009년 계획에 담긴 기준이 지금까지 통용되어야 하는지, 관련 필요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제시는 단 하나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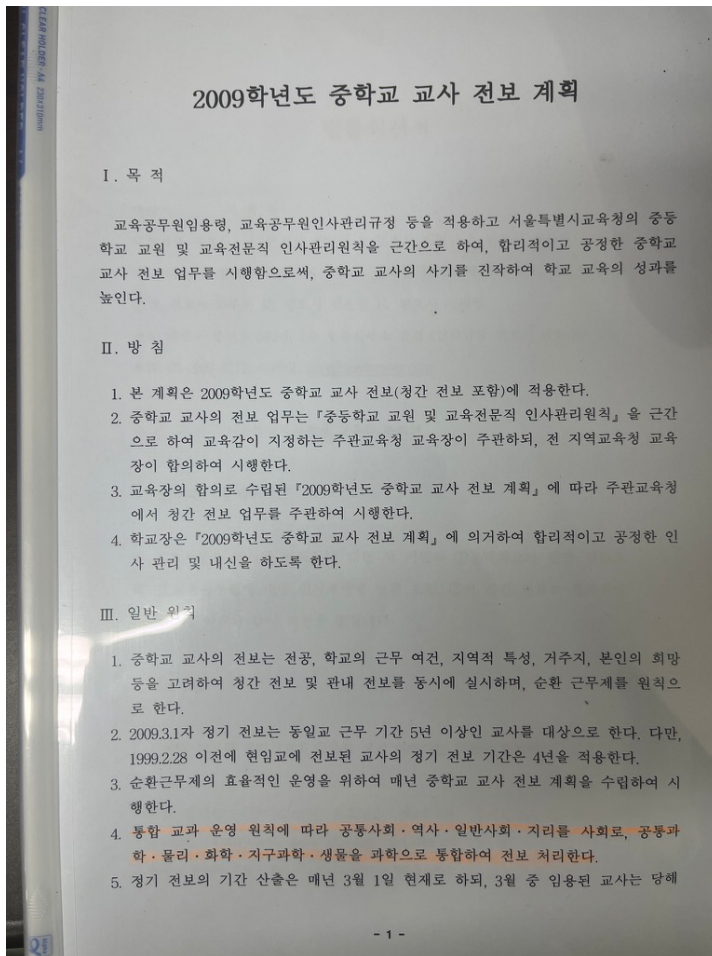


그림5. 서울시교육청이 '통합교과 운영 원칙에 따른 통합전보' 근거로 제시한 '2009학년도 중학교 교사 전보 계획'

그러나 앞서 밝혔듯,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것은 2010년이다. 즉, 2009년과 2010년의 교과서는 다르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2009학년도 교과과정을 기준으로 한 전보가 현재에도 통용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처럼 무리한 주장을 거듭하는 이유는,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과 징계에 대한 합리화 단 하나다.

4) 공익신고자에 대한 탄압으로서의 지혜복 교사 전보

이에 지혜복 교사는 2024년 1월 30일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

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정보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대한 민원

(1) 작년 2023년 9월경 A학교에서 발행한 성비위 사건 및 2차 가해 문제, 인권침해 문제, 피해학생에 대한 신분유출 및 부적절한 대응 등 학교장과 생활지도부장의 비위를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였습니다.

(2) 그리고 관련하여 12월경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에서는 2차 가해 문제 및 학생 인권침해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A학교에 대한 권고 조치를 통보하였습니다(붙임자료 '인권센터 권고문' 참고). 이를 통해 신고인의 신고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3) 그러나 A학교의 학교장은 인권센터 권고는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이 사건 신고인을 학급 수 감축을 빌미로 하여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려고 합니다. 이는 관련 법률 및 조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민원인 지혜복

서울특별시교육감 귀중

그런데도, 2024년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황당한 법리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했다. 지혜복 교사가 횡령 혹은 배임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부패방지법 관련 공익신고가 아니니 공익신고 자체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황당한 법리 적용으로 산하기관이 강행한 부당 전보를 사후적으로 합리화한 것이다.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전보 철회 요청과 관련하여 '해당교사가 공익제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2. 민원내용의 피신고인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 학생들의 신분을 누설했다는 사항**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부족,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관련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4. 해당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불인정은 고의적 법리조작이다. 이에 법률가들이 대거 나서기도 했다. 2024년 8월 14일, 변호사 77인이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인정을 촉구하며 법률의견서를 발표했다. 또한, 2024년 8월과 9월, 그리고 2025년 3월 공익제보자 보호재단인 <호루라기 재단>이 세 차례나 법률의견서를 발표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과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했다. 8월 14일법률의견서를 발표한 변호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결론: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이며, 귀 기관이 주장한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이 상당하고 절차가 적법했다는 점은 이유 없으므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은 공익신고자인 지혜복 교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서 제출 변호사 (가나다순)

강미술 강은희 강한결 권영국 권호현 김도희 김동현 김민재 김병욱 김산하 김상연 김상은 김소리 김예지 김유정 김은진 김종보 김준우 김차곤 김하경 김하나 김희진 노푸른 류하경 문은영 박갑주 박다혜 박인동 박인숙 박지아 범유경 봉하진 서성민 서희원 손명호 손익찬 손정희 송영섭 신선아 신예지 신하나 안우혁 안지희 양현준 오민애 오선희 유태영 윤재은 윤지영 이덕우 이두규 이선민 이소아 이수열 이예인 이윤주 이종훈 이지영 임자운 임재성 장종오 전다운 전민경 전정환 정기호 정준영 조덕상 조민지 조세현 조영관 조영신 조윤희 최석균 최정규 최종연 함유경 허자인

4. 2024년 8월 서울시교육청, 약속을 뒤집으며 지혜복 교사 중징계 착수

7월 10일 2024년 8월 5일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의 24.03.18. 공문을 외부 변호사들에게 법리검토하고,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단 4일 만에 약속을 파기했다. 이는 교육청 스스로 공문의 문제, 즉 교육청 자신의 오류를 인지했기 때문이다.

2024년 8월 5일 교육청과의 교섭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불인정한 공문에 대한 외부 법리검토를 약속했다.

[A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 서울시교육청 1차 실무교섭 결과]

- 시간/장소: 2024년 8월 5일(월) 15:30 달개비하우스

- 참석

- A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백종성(공동집행위원장, 금일 교섭대표) 최은경(공동집행위원장) 지혜복(당사자)
- 서울시교육청: 주소연(교육정책국장, 금일 교섭대표) 김영혜(인사담당 장학사)

1. 7월 10일 교육감 면담시 확인된 교육청 입장에 대해 7월 31일 공대위가 발송한 요구에 관한 교육청 입장을 각 요구별로 확인함. 해당 요구는 아래와 같음

- ① 조희연 교육감 2차 면담
- ② 6.18. A학교 기관경고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로,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 공개 및 A학교 책임자 징계
- ③ A학교 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 감사 및 징계
- ④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 ⑤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및 부당전보 인사보복 철회

2. 공대위는 교육청 입장의 일부 취지에 공감하며 세부 방안을 차후 논의기로 하기도 했으나, 교육청 제시안의 전반적 기조와 공대위 요구의 간극이 여전히 큰 상황임을 밝히며, 진전된 입장 제시를 요구함.

3. 특히,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2024년 3월 18일 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이 기본법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결여한 채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고자 작성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규탄함. 이어,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법리검토를 거치지 않은 감사관 공문이, 중부교육지원청에 의해 2024년 5월 22일 지혜복 교사 소청심사에서 과장되어 인용되었고, 소청심사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규탄함. **이에, 공대위는 2024년 3월 18일 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에 대한 △법리검토 △정정조치 △공문시행 책임자 징계 요구를 담은**

문서를 전달함.

- 3-1. 교육청은 3번 항목 관련 즉각적 법리검토를 약속하였으며, 법리검토 결과로 2024년 3월 18일 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의 오류를 확인할 시 상응하는 후속조치 추진을 확인함.
4. 또한, 7월 31일 공대위가 발송한 요구 중 '부당전보 인사보복 철회'에 대해 교육청은 전보가 부당함을 인정할 수 없으며,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항상 통합교과 운영원칙에 따라 사회과와 역사과를 합쳐서 전보해왔으며 앞으로도 통합 전보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개진함. 이에, 공대위는 교육청 입장에 대한 수용불가를 밝힘. 또한, 2차 실무교섭에서 '사회과와 역사과 분리라는 교과과정 운영 원칙에 반하는 전보 원칙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문서로 제시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함. 또한, 지혜복 교사 전보가 업무상 필요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문서로 제시할 것을 요구함.
- 4-1. 교육청은 4번 항목 관련 문서를 제시기로 함.
5. 2차 실무교섭은 8월 9일(금) 16:00 동일 장소에서 진행기로 함.

그러나 불과 4일 만인 8월 9일, 서울시교육청은 약속을 뒤집었다. 이는 명백한 오류를 덮고가자는 교육감 자신의 판단이었다. 당일 발행한 교섭단 입장은 다음과 같다.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교섭단 입장]

1. 2024년 8월 9일 16시, 서울시교육청과의 2차 실무교섭이 있었습니다. 양측 배석자는 1차 실무교섭과 같습니다.
2. 서울시교육청 측은 8월 5일 1차교섭 당시 약속한 <2024년 3월 18일 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에 대한 교육청의 <즉각적 외부 법리검토 및 법리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이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법리검토 여부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결정에 맡겼음을 통지했습니다. 감사관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악의적으로 부인한 공문을 시행한 당사자입니다.
3. 공대위 교섭단은 1차교섭 당시 '즉각적 법리검토를 외부에 의뢰하겠다'는 약속과 완전히 달라진 서울시교육청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이어 서울시교육청 측으로부터 교섭결렬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교섭결렬을 통보 받은 이 참담한 순간에조차 '조희연 교육감이 면담에서 약속했던 대로 직접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만나야 한다'고 재차 요구할 정도로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교육청과 교육감의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4.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최초로 부인한 3월 18일자 공문에 대한 법리검토 여부를, 해당 공문을 시행한 기구의 결정에 맡겼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통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공문에 대한 법리검토조차 의뢰하지 못할 정도로 공문에 담긴 오류와 허위가 분명하다는 것, 즉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징계 압박에 이은 교섭 결렬은 조희연 교육감의 분명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5. 2차 교섭 전날인 8월 8일, 서울시교육청 측은 서울시교육감 직인이 찍힌 '중징계의결 요구서'를 지혜복 교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교섭 하루 전 '발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수신: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인 공문을 지혜복 교사에게 전달한 의미는 분명합니다.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고, 오늘 교섭 결렬로 이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6. 예정된 수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것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학생들 곁에 선 교사를 벼랑으로 몰았습니다. 굴하지 않고 싸울 것임을 밝힙니다.

2024년 8월 9일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교섭단

2025년 8월, 서울시교육청의 교섭 파기 결과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다.

- ① 2024년 8월 5일 1차 교섭에서, 교육청 교섭단은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인정 관련 외부 법리검토를 약속했다.
- ②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1차 교섭결과 수용을 거부했고, 바로 다음 날인 8월 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지혜복 교사 중징계 의결 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리고 이는 8월 8일 공대위로 전달되었다. 그런데 이는 공대위로 전달될 이유가 없는 문서였다. 즉, 서울시교육청은 ‘발신 서울시교육감’, ‘수신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인 문서를 공대위로 전달한 것이다. 이는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요구를 포기하고, 학교로 돌아가라는 협박이었다.

그림6. 2024.8.6.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2. 26.>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1. 인적 사항	성명(한글) 지혜복 (한자) 地惠福	생년월일 1965. 2. 8.
	소속 용강중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송암로25길 28, 103동 701호(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아파트)	직위(직급) 교사 재직기간 1994. 3. 1. ~ 현재

2. 징계 사유
구체적 징계사유 별지 첨부

3. 징계 의결 또는 징계 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 (신청)권자의 의견
징계혐의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에 의하여 “중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하는 것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해당됨(대상금액: 원/ 배) ☒ 해당 없음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신청)합니다.

2024년 8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m²]

③ 8월 9일, 2차 교섭 자리에서 교육청은 교섭결렬을 선언했고, 2024년 8월 13일, ‘서울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 징계위원회’는 지혜복 교사에게 8월 21일 징계위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④ 8월 21일 징계위는 한차례 연기를 거쳐 9월 11일 14시에 소집되었고, 해당 징계위 결과 지혜복 교사에게는 9월 27일자로 ‘해임’을 통보했다.

교육청 행보의 주된 원인은 당시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과 연동되어 있었다. 즉, 지혜복 교사 전보 취소가 조희연 교육감 재판에 불리한 근거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법리검토 약속 파기가 재판 때문임은 교육청 교섭대표 역시 직접적으로 시인한 바다). 조희연 교육감은 본인 재판을 위해 지혜복 교사의 요구를 짓밟았다.

지혜복 교사는 그렇게 교사 신분마저 박탈당했다. 2024년 11월 초까지, 해임규탄 성명을 발표한 단위는 다음과 같다. 교육당국조차 ‘파면’을 결정하지 못한 배경, 징계를 미루어왔던 배경에 이러한 지지가 있었다.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9.27.) A학교공대위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징계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 (9.28.)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성폭력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 해임이 원말인개! - 학교 내 성폭력 해결 외면하고 공익제보교사 징계한 서울시교육청 규탄한다.” (10.4.) (사)포항여성회 · (사)광주여성노동자회 · (사)안산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 구술노동자후원회 ·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 국제민주연대·극단 고래 ·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 · 노동희망발전소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다산인권센터 · 대구여성노동자회 · 대구여성주의그룹 나쁜페미니스트 · 데모클럽 베리프론트 ·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보합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 부산평화센터 · 불꽃페미액션 ·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 서울여성노동자회 ·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 언니들의병원놀이 · 연대하는교사잡것들 · 이화생활도서관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천여성노동자회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 장애여성공감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여성노조 · 전국여성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습자산업노동조합 · 전북여성노동자회 · 정치하는엄마들 · 제주평화인권센터 ·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 · 책방79-1 · 천주교인권위원회 · 코레일네트워크지부 · 투명가방꾼 ·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성전화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지혜복 교육노동자의 투쟁에 KEC지회 조합원들도 함께합니다! -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10.26.)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성폭력 해결 외면하고 해임징계, 형사고소까지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합니다. 우리에게는 포괄적 성교육 법제화를 통한 성평등 교육이 절실합니다” (10.28.) 전교조 페미니스트 현장조합원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한 지혜복 교사의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지지한다” (10.28.)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지혜복교사에 관한 세종호텔지부의 입장문” (10.29.)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과의 면담 약속 즉각 이행하라” (10.30.) 정의당

“A학교 성폭력 사건·교과운영 부조리 공익제보 교사의 부당해고 철회를 지지합니다” (10.31.)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한 지혜복 교사의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지지한다 (11.7.)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지혜복 교사의 투쟁은 이미 개인의 투쟁을 넘어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2024.12.3. 내란 이후, 말벌 동지들이 대거 A학교 공대위 투쟁에 연대하기 시작했다. 광장에서 A학교 사안이 알려지며, A학교 투쟁은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5. 정근식 교육감에 맞선 투쟁

2024년 10월 정근식 교육감이 당선됐다. 전임과 마찬가지로 ‘진보교육감’을 표방한 정근식 교육감 역시 2024.03.18. 공익제보자 불인정 공문을 폐기하기는커녕 법리검토조차 거부하며 탄압으로 일관했다.

관련 정근식 교육감과의 1, 2차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 면담 이후 교육청은 공대위 요구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고, 2025년 2월 19일부터 21까지 정근식 교육감 2차 면담을 요구하는 노숙투쟁 이후에야 비로소 정근식 교육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교육청의 태도는 그 어떤 것도 변함이 없었다.

1) 정근식 교육감 1차 면담

정근식 교육감 면담 결과

- 시간·장소: 2024년 12월 23일(월) 17:00 교육청 별관
- 참석: 지혜복 최은경 백종성 (공대위) / 정근식 주소연 조기식 (교육청)
- 진행

1. 공대위는 아래 요구를 제시하며 경과를 설명함.

- ①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 ② 서울학교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포괄적 성교육 도입, A학교 및 서울학교 성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TF구성
- ③ 지혜복 교사 형사고발 취하
- ④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불인정 관련 시정과 문책
 - 24.03.18. 감사관 공문 폐기
 - 24.11.08. 교원소청심사위 답변서 문건 폐기
 - 이민종 감사관 문책
- ⑤ 2024년 6월 18일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 공개, A학교 교장·교감 징계, 중부지원청 감사 및 징계
- ⑥ 교섭단 구성

2. 교육감은 제반 요구를 청취함. 요구 관련 공대위 자료를 요청함.

[12.26 전달 자료]

1. 피해학생 학부모 의견서 모음
2. 240805 공익제보자지위인정 교섭요구안 및 교섭결과
3. 240814 변호사 77인 연명 법률의견서
4. 240903 호루라기재단 두번째 법률의견서

2) 정근식 교육감 2차 면담

A학교 공대위 - 정근식 교육감 면담 결과

- 2월 21일 17:00 서울시교육청 본관 교육감실 / 면담 시작 17:18

- 참석:

- 공대위: 지혜복(당사자) 최은경(공동집행위원장) 백종성(공동집행위원장) 서재유(집행위원)
- 서울시교육청: 정근식(교육감) 임광빈(교육감 비서실장) 주소연(교육정책국장) 김영혜(장학사, 중등교육과). 김영혜는 면담 중 공대위측 퇴장 요청으로 송호석(장학사, 비서실)으로 교체

[결과]

1. 교섭 경과 관련

- 정근식 교육감은 2024년 12월 23일 1차 면담 이후 공대위 요구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함
- 정근식 교육감은 2025년 2월 20일 23시 이후 교육청이 한 농성자에 대한 야간 단전조치에 대해 사과함

2. 공대위 요구 관련

-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2024년 3월 18일 자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 공문에 대한 법리검토 여부에 대해 2주 내(3월 7일)로 교육감 비서실장을 통해 공대위에 회신키로 함.
-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 형사고발은 중부교육지원청이 한 것이며 취하 권한이 본인에게 없다고 설명함. 이에,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 형사고발 취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지 확인한 후, 있을 시 취하하고, 없을 시 중부교육감에게 취하를 권고할 것을 정근식 교육감에게 요구함.
- 공대위는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및 형사고발 취하 요구 이외의 요구에 대해, 교육감 비서실장을 포함한 교섭단 약간 명을 구성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다룰 것을 요구함. 서울시교육청은 2주 내 교섭단 구성 여부를 포함해 해당 요구에 회신키로 함.

정근식 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드러난 바, 교육청 역시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의 오류를 인지하고 있었다. 교육감은 다음 발언을 했다. “지혜복 교사의 고통에 공감하며 할 수 있는 바를 하고자 한다”, “서명한 변호사들 중에는 내 제자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는 내 20년 친구이기도 하다.”

공익제보자 불인정이 오류였음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정근식 교육감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직권남용으로 문제제기 받을 수도 있다’며 오직 본인의 안위를 걱정할 뿐이었다. 교육감과 교육청은 관료적, 보수적 행태를 여실히 드러냈으며 2025년 2월 28일에는 지혜복 교사와 연대하는 23명을 폭력연행에 이어 지혜복 교사에 대한 악의적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극도의 탄압을 자행했다.

그러나 이런 서울시교육청조치, 최근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을 주도한 법리조작 핵심 당사자 이민종 변호사를 감사관직에서 계약해지하며 자신의 오류를 간접적으로 시인할 수 밖에 없었다.

6. 전교조 내 과정

1) 2024년 2월 3일 서울지부 부당전보 규탄 성명 발행

공익제보교사 인사불이익 금지 법령 위반한 서울시교육청의 부당전보 강행 규탄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전보 배치 인사관리원칙을 지켜라!
-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하고, 공익제보 교사와 피해 학생 보호하라!

1. 서울 중부교육지원청과 A중학교는 교사 전보배치 인사관리 원칙을 어기고, 부당한 이유를 들어 공익제보 교사를 강제로 다른 학교로 보내려 한다. 해당 교사는 2023년 A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의 공익제보자다. A중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은 당시 발생한 학교폭력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조사과정에서 학생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해당 교사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학생인권센터 권고를 받아내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권고 대부분이 아직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해당 교사는 제보 당사자로서 학생인권센터의 권고가 학교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학교에서 인권 친화적인 성평등 교육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A중학교는 해당 교사를 일방적으로 정원감축 전보 대상자로 결정하였다.

2.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법령은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인사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제보자를 교과 정원 감축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전보 조치하는 것은 명백한 인사불이익이며 이는 관련 법령 위반이다.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불이익조치는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불이익조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국민권익위 또는 서울시교육청에 신청할 수 있음"(교육감은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해당 조례 제1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또한, 교과의 정원 감축에 따른 비정기 전보 대상을 정할 경우, 제일 첫째 원칙은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 담당 교사 수급'이다. 2023학년도 A중학교는 역사 교사 3명이 역사를, 사회 교사 2명이 사회를 가르쳤다. 2024학년도에는 역사교사 2명과 사회교사 2명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 따라서 인사관리원칙에 의하면 역사교사가 정원 감축 대상이다. 하지만 A중학교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이를 무시하고 역사와 사회를 통합교과라 주장하며, 사회 교사인 공익제보자를 전보 대상자로 신청하였고, 수 차례 항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로 전출 발표하였다.

4. A중학교 역사 사회 교사들은 2차례의 교과협의회를 거치면서 비정기 대상자 결정을 위한 원칙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관리자들이 교과협의회 장소를 교장실로 하고 직접 참여하였으며, 결국 해당 교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제보교사인 사회 교사를 전보 대상자로 결정하였다. 또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는 전보 서류를 본인의 동의와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하였다.

5.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학교 폭력 사안 발생 직후 심각한 2차 가해와 사안 조사과정에서 벌어진 생활지도부의 중대한 인권 침해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완전히 위축되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폭 심의위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피해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 관련 상담이나 신고조차 못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공익제보 교사가 다른 학교로 가게 된다면 피해 학생들이 상담해 왔던 교사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고에 따른 학교의 조치가 아직 제대로 취해진 것이 없어서 이행이 시급하다.

6. 이런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부당전보 발표를 2월 2일 강행하였다. 이는 학생과 교사의 권리 신장을 위해 애써야 할 교육청이, 학교 내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고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교사를 피해 상담 학생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과 교사 보호를 포기한 서울시 교육청을 규탄한다. 그러나 3월 개학 전까지 서울시 교육청이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는 있다.

7.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를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 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와 피해 학생을 보호하라!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교사 전보 배치 인사관리원칙을 지켜라!

2024년 2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교조 서울지부는 애초 위와 같이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라는 점 △지혜복 교사의 전보가 교사 전보배치 인사관리 원칙을 어기겠다는 점 △관리자들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점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보라는 점 △학생들이 상담해왔던 교사가 사라진다는 점을 짚으며 부당전보를 강행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했다.

2) 2024년 2월 22일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위

[A학교 부당전보투쟁 저지 투쟁의 건]

- 서울지부는 부당전보로 판단하고 있는가? 그 이후 투쟁방침은 “출근거부 투쟁인가? 법률 투쟁인가?”를 결정해야 하지 않는가?

- 서울지부 성명서에 따르면 부당전보 투쟁을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부장) 부당전보 맞다.

- 그렇다면 이길 싸움만 지원하는가?

(지부장) 법률 투쟁은 그런 성격이 있다. 그런 사례도 있다.

위는 2024년 2월 22일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위 회의록이다. 2월 중하순 까지도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함을 인정했다. ‘부당전보는 맞으나 법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며, 이에 투쟁을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 2024년 2월 전교조 서울지부의 결정 요지였다. 부당전보는 맞으나 법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기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결정을 노동조합이 했다. 인사의 부당성은 원래 법적 입증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이 싸워야 한다. 더군다나 지혜복 교사 전보는 ‘공익제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보’라는 점에서 그 부당성이 명백하다. 명색이 노동조합이 법률가들보다 더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고도,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에 대한 반성적 문제의식이 없다.

그리고 2024년 3월,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철회했고, 나아가 전보의 부당성까지 부인하기 시작했다. 지혜복 교사가 전보를 거부하며 B학교로 출근을 거부한 것이 중요한 계기였다. 전술상 차이가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번졌다. 지혜복 교사가 애초 출근거부 투쟁을 고려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교육청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시 서울시교육청도 통합전보의 법적 근거 부재를 인정하여, 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이 "A학교에 정원 외 인원으로 남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거나, "서울시교육청 산하 소속 기관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교육청과의 협상이 파국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혜복 교사는 출근거부를 결심했다.

이후 심지어 노동조합 간부가 '지혜복 교사가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했다'는 교육청의 악질적 선동을 노동조합 내 유포하는 행위까지 수차례 발생했다. 피해학생들의 신원을 유출한 주 당사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혜복 교사가 마치 비정규직을 억압하는 '정규직'인양 비난하기도 했다. '지혜복 교사가 B학교로 전보가기 싫어 성폭력 사안을 끌어들었다'는 주장까지 횡행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지혜복 교사는 전보가기 싫어 출근거부라는 고강도 투쟁을 결단했고, 해임까지 감수한 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투쟁은 지속되었다.

3) 2024년 8월 22일 서울지부 집행위 지혜복 교사 지지안건 심의보류

8월 22일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위원회에 지혜복 교사 지지안건이 발의되었다. 지혜복 교사를 지지하는 지회장들이 앞장섰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전교조 회의규정에도 없는 '심의보류'로 처리되었다. 표결 결과는 총원 25. 심의보류 찬성 12, 심의보류반대 10, 기권3였다. 지혜복 교사는 참관과 모두발언조차 거부당했다.

4) 2025년 3월 1일, 교육청 집단연행 사태에 대한 사용자측 보도자료 노조 유포

최근 확인된 바,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 집단연행 사태에 대해 2월 28일 교육청이 제작한 악의적 보도자료를 3월 1일 조합 내에 그대로 전파했다.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에 대해, 7월 30일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거짓으로 해명했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A학교 공대위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이 발행한 악의적 보도자료를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이므로, 이 보도자료가 공유되었다면 그 경과에 대해 서울지부는 알 수 없습니다.3. 전교조 서울지부는 A학교 사안에 대해 지부집행위에서 의결한 지난 6월 30일 입장문 외에 다른 입장은 없습니다.
https://share.google/GgcfcB6nMZgLxOqZv |
|---|

이에 대해 공대위는, 교육청 보도자료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로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점은 2025년 3월 6일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공대위는, 전교조 서울지부장의 해명은 거짓임을 드러내는 전교조 경기지부장의 발언을 제시했다. 해당 발언은 다음과 같다.

'서울지부로부터 교육청 보도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았고, 전교조 서울지부가 그 공개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았다'

2025년 8월 21일,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위원회에 방문해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답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청이 보낸 2월 28일자 "주간 보도기획 안내자료" 메일로 해당 자료를 받았다.
둘째, 전교조 서울지부는 전교조 경기지부에 해당 자료를 전달하며,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위 내에서만 공유한 자료"라고 구두로 말했다.

이로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두 가지 거짓말을 인정했다. 첫째, 조합 내에 자료를 전달한 주체가 전교조 서울지부라는 점. 둘째, '자료가 전파된 경과를 알 수 없다'는 전교조 서울지부장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점.
사용자의 악질선동을 조합 내에 그 어떤 단서조항도 없이 전파한 행위 자체가 민조노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전교조 서울지부는 해당 자료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였다는 공색한 변명을 했을 뿐이다. 이 변명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이제는 해당 자료를 메일로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본질은 사용자의 악의적 선동을 노동조합 내에 전파한 행위 그 자체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측 악성동을 유포했다. 민주노조에서 묵과될 수 없는 행위를 하고서도, 전교조 서울지부는 하등의 사과가 없다.

5) 2025년 6월 30일 “A학교 지혜복 선생님의 전보거부 투쟁에 대한 전교조 서울지부 입장” 발표

2025년 6월 30일, 전교조 서울지부는 “A학교 지혜복 선생님의 전보거부 투쟁에 대한 전교조 서울지부 입장”을 공개했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2. 지혜복 선생님의 전보는 A학교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신고로 인해 초래된 전보가 아닙니다.

- 1) 지혜복 선생님은 12월 전보대상자 선정을 위한 학교 내 논의 과정에서 'A학교의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학생을 책임지기 위해 학교를 옮길 수 없다', '공익제보자로서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을 책임지기 위해 잔류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학교 측에 이와 관련하여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 2) 지혜복 선생님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전보대상자 선정 과정인 12월이 아니라 1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의 전보대상자 선정이 끝난 이후에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 논리는 마치 피해학생 편에선 교사에 대한 사용자 측 공격을 보는 듯 하다. A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성폭력 2차가해 처리 과정에서, 지혜복 교사는 관리자들과 극심한 마찰을 겪었고, 지혜복 교사가 학교를 나가주기를 원했다. 이것이 2023년 말 A학교의 조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측은 ‘통합전보’라는 명분을 걸었다. 전보가 성폭력 사안과 무관한 것으로 보여야했기 때문에, 학교측 행보는 당연했다. 바로 그랬기에,

첫째, 지혜복 교사는 학교측이 내건 ‘통합전보’ 명분에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며 해당 압박과 싸웠다. 학교측이 표면에 내건 이유가 ‘통합전보’ 였기 때문이다. 학교측은 당연히 ‘이제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피해학생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통합전보’에 근거가 없다며 싸우는 것이 무슨 문제라는 말인가. 사용자측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문제

적이다.

둘째, 지혜복 교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공익제보자가 원치 않는 전보는 그 자체로 불법임을 인지한 시점은 1월이다. 그랬기에 주변 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전보가 어긋난다는 주장을 1월에 했다. 이것이 무슨 문제라는 말인가.

셋째, 2024년 서울시교육청의 전보 발표 날짜는 2월 2일자였다. 그리고 심지어 임기는 3월 1일 시작된다. 임기 시작 전 전보작업의 오류는 수정 가능하고, 그런 사례는 무수히 많다. 2023년 12월에는 A학교 내 전보 논의가 시작되었을 뿐이다. 전보 절차가 진행되던 1월, 지혜복 교사는 중부교육청과 시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수없이 직접 찾아가 전보의 부당성을 설명하였다. 12월에 주장하지 않으면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라는 객관적인 사실과 전보의 부당성이 사라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2025년 6월 30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발표한 입장 하단에는 [참고]로 다음 설명이 있다.

“조합원의 투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 당사자의 이해와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당사자의 소송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그 동안 **조직 내·외부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의 요구로 인해 대외적으로 지부의 공식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안내드립니다.”

“당사자의 소송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조직 내·외부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

다”라는 6월 30일 성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위 사태를 포함하여, 전교조 서울지부 주요 간부의 사실 왜곡은 자료집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많았다. 6월 30일 전교조 서울지부 입장 발표 관련, 6월 25일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집행위 회의록에는 심지어 다음과 같은 말도 있다.

2호 안건. A학교 지혜복 선생님의 전보거부 투쟁에 대한 전교조 서울지부 입장 채택 및 공개 시기 승인의 건

...

(지부장) 현재 지혜복 선생님이 SNS에 계속해서 의견,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올리고 있고 그것들이 퍼지고 있다. 우리의 입장을 알릴 필요가 있다.

...

(사무처장) 공대위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 지금 내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쪽 얘기만 듣고 연서명을 하는 사람들도 일종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서울지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바로 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쪽 얘기만 듣고 연서명을 하는 사람들도 일종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지혜복 교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일종의 피해자’라고 여긴다면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지 않도록 공론장에 나와야 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공개 토론을 거부하며 해당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웃는 것은 사용자측뿐이다. 실제로 지혜복 교사가 제기한 부당전보 무효소송에서, 교육당국은 다음과 같이 서울지부 입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원고와의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2025. 6. 30. “A학교 지혜복 선생님의 전보 거부 투쟁에 대한 전교조 서울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을 제19호증 전교조 서울지부의 입장문). 전교조 서울지부도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았는지, 원고에 대한 전보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행정적 부당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A학교는 2023년 과원 발생으로 비정기전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전 교직원이 참여하는 학교발전협의회를 통해 비정기 전보대상자 선정기준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 기준에 따라 원고가 전보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점, ‘사회-역사 통합전보’는 서울 지역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통용되던 것으로 원고를 강제 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거나 2023 전보 원칙 및 교육과정 운영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림7. 2025.07.07. 중부교육지원청 준비서면

6. A학교 투쟁의 과제

1) 교육노동자 운동의 자기 역할을 통한 민주노조의 원칙 수립

전교조 서울지부를 비롯한 교육노동자 운동은 A학교 성폭력과 그에 맞선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성폭력으로, 그에 맞선 교사에 대한 노동권 탄압으로 인식해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사들의 집단적 힘을 결집해야 한다.

법적 입증의 어려움을 이유로 투쟁을 회피하거나, 사용자 측 악의적 선동 자료를 조합 내부에 유포하는 등, 민주노조에서 있어서는 안될 행위들이 있었다. 선거기간부터 침묵과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근식 교육감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선 교육노동자들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합 내부의 관료주의와 보수적 의사결정을 극복하고, 현장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반영하는 민주적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우선 A학교 투쟁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교육노동자들의 실천을 결의해야 한다.

2) 사회적 연대와 투쟁의 정치적 확대

지혜복 교사 투쟁은 이미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쟁점으로 확장되었다. A학교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 양육자들, 각급 노동·시민·사회단체, 여성운동, 산업과 부문을 넘나드는 노동자들의 연대가 있었

다. 그리고 이는 교육노동자 현장투쟁을 전 사회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흐름을 더욱 확장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A학교 성폭력이 특정 학교에서만 일어난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전국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적 성폭력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투쟁은 단지 A학교 문제의 해결에 그쳐서는 안 되며, 만연한 성차별·성폭력 문화를 드러내고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회적 투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연대와 정치적 확대를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를 세워나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교육노동자 지혜복의 투쟁이 정의롭지만 힘든 이유

산양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강원대표)

소위 진보교육감 시기에...

학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사실을 제보하고 피해자 학생의 편에 서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한 지혜복 교사의 정의로운 행동이 불러온 결과는 부당전보와 부당해임이었다. 이시기 최고 행정책임자는 소위 진보교육감이라 일컫는 조희연 교육감¹⁾이었다.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진보교육감에게 여전히 기대감과 신뢰감이 있었던 사람들은 20·21·22대 교육감을 역임한 사람이고 유신헌법 긴급조치 철폐 운동으로 옥살이를 한 사람이고 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전교조 해직 교사이긴 하지만 조희연에 비해 힘이 덜 센 지혜복 교사를 외면하거나 비난하는 쪽에 서게 되었다.

도대체 진보교육감²⁾은 무엇인가?

임명제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면서 등장하게 된 진보교육감의 흐름은 대강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임명제 (1949~1990)

→ 1991년 3월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2. 교육위원회 또는 선거인단(학교 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 (1991~2006)

→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통과

3. 전국 동시 직선제 (2010년~)

4. 역대 이른바,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

- 2010년 6월 지자체 선거 :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6개 지역)
- 2014년 6월 지자체 선거 :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북, 전남, 부산, 인천, 세종, 경남, 충북 충남, 제주(13개 지역)
- 2018년 6월 지자체 선거 :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북, 전남, 부산, 인천, 세종, 경남, 충북, 충남, 울산, 제주(14개 지역)
- 2022년 6월 지자체 선거 : 서울, 세종, 인천, 충남, 울산, 경남, 전북, 전남, 광주(9개 지역)

교육 혁명을 꿈꾼 많은 사람들이 진보 교육감을 뽑았으나 진보교육감 4기를 맞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는 경쟁(입시)교육, 교원 평가와 성과급, 관료주의 교육행정, 단위학교 자치와 자율성 제약, 교육노동자의 과

- 1) 조희연 교육감은 2024년 8월 29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함. 2025년 815 특사에 포함됨. 지혜복 교사의 부당 전보는 2024년 3월 1일자였고 부당 해임 및 형사고발은 9월에 이뤄졌지만 조희연 교육감 체제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음.
- 2) 진보교육감 관련 평가 내용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정책위 최덕현 동지의 원고 ‘유천초 혁신학교 지정철회와 진보 교육감 운동의 현재’에서 발췌

중한 업무, 여전한 차별과 인권 침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립학교의 비민주적 운영과 비리, 너무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교사의 교육 과정 자율 편성과 평가 권한, 교수-학습 방법 결정권,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은 여전히 없다. 물론 일제교사가 표집으로 전환되고 고교 평준화 확대와 무상급식, 노동조건의 개선 등 성과점들도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성과들조차 온전히 진보 교육감의 공은 아니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며 투쟁해 온 과정 속에서 진보교육감 시기에 결실을 맺게 된 것 뿐이다.

사실 과거 전교조가³⁾ 꾸준히 투쟁해 오고 주장해 왔던 상들이 대거 진보 교육감 정책에 투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진보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전교조 내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된다. 교육감을 보좌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면서 조합원들이 대거 관료로 이직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실제로 진보교육감의 정책을 반영하여 추진할 사람도 교육청 내에 필요하긴 하다. 문제는 교육감을 보좌한다는 명분으로 교육 관료가 되어 교육청에 들어간 일부 전교조 조합원은 교육을 바꾸려는 조합원의 요구는 뒤로 하고, 개인의 영달과 승진을 꾀하거나 전교조를 교육감에게 의존하게 해 교육청 2중대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진보교육감 1기~3기를 전 전교조강원지부장인 민병희 교육감이 이어갔고 역시나 많은 조합원들이 장학사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갔으나 4기 보수교육감인 신경호가 들어선 후 보수교육감의 정책을 입안할 수 없다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평교사로 돌아온 조합원 출신 관료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내부에서 정책을 거부하며 투쟁하는 사람 또한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신경호 교육감은 전교조와 교육청과의 단체협약 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무효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교육청 관료로 들어간 조합원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사실 민병희 교육감도 교육감 당선 이후 교육감 전용 주차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드나드는 문조차 자신의 손으로 열지 않는 등 전형적인 관료의 길을 걷고 있음을 이미 부지불식간에 보여주고 있었다. 2014년 말 강원도교육청이 공공운수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와 급식비 등 처우 개선 약속을 했으나 2015년 3월 교섭 과정에서 약속 후퇴는 물론 차별 지급 방안까지 내놓으면서 교육공무직과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농성에 돌입하게 된 사건은 유명한 일이다. 더군다나 농성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대면조차 하지 않으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와 해직 교사 사안에 대한 첫 항의 집회 중 민병희 교육감은 전교조 집행부를 교육감실로 들어오게 해 직접 면담을 한 차별적인 사례도 있었다. 이후엔 전교조와의 교섭자리에서조차 모르쇠, 만소리 하기, 시간 때우기로 일관하다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리는 일도 있었다. 무엇보다 유천초 투쟁을 야기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교육노동운동 진영의 경우 교육감이 교섭 대상인 사용자가 아닌 이른바 ‘우리 교육감’으로 표현되는 교육감 의존 경향, 교육감 의존 경향으로 현장의 요구를 ‘민원’으로 교육청에 하소연하여 해결하는 ‘자판기노조’ 경향, 노동조합운동을 승진이나 관료 입문의 스펙, 절차로 활용하려는 경향 등으로 민주노조운동의 민주성, 계급성, 투쟁성, 연대투쟁 정신이 약화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이른바 ‘진보 교육감 운동’이 노동자 계급적 입장으로 교육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

3) 지금의 전교조는 전교조의 강령과 참교육 실천 강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지금의 전교조와 구분하고자 과거 전교조라는 표현을 씀.

기는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에게는, 그 뒤를 이은 정근식 교육감에게는 다른 기대를 품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절망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도대체 전교조는 왜....

도대체 전교조는 왜 아직도 진보 교육감 운동에 미련이 클까? 지난 대선에서 민주노총은 ‘내란 세력 재집권 저지’라는 명분으로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양경수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진보 정당의 후보 및 진보 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를 지지한다”를 대선 방침으로 제안했다. 이럴 경우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연대연합을 하면 민주노총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결국 실제로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 이에 반대해 사무총장은 사퇴했다⁴⁾. 민주노총은 전통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 정당 강화를 목표로 했었다. 그런데 왜? 솔직히 국힘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명분을 방패로 더민주에 기대어 관료의 길로 나서려 함은 아니었는지 전교조를 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 전교조를 보면 앞서도 언급했지만, 진보 교육감 운동을 명분으로 전직 지부장은 물론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대거 교육청 관료로 들어간 사례가 있었다. 22년 선거 결과를 보면 오히려 진보 교육감도 후퇴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A학교 같은, 유천초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전교조는 보이지 않는다.

전교조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물론 과거의 전교조도 잘못된 일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 기간제교사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반대일 것이다. 많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렸었다. 전교조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됐다고 물론 당시 이 결정을 규탄하며 반대 성명을 낸 조합원들⁵⁾도 있다. 또한 이와 관련 그 당시 중앙집행부 임원이었던 분은 훗날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전교조 집행부와 뜻을 달리하는 조합원이었지만, 심지어 전교조 사업도 아니었지만 조합원이었기에 국가폭력의 피해자였기에 무조건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애쓴 노동조합의 모습은 읽지 않고 있었다.

지금의 전교조는 학생인권법을 반대하고 휴대폰 강제 수거 및 규정에 대해 환영하고 행정실 법제화는 반대한다. 사실상 전교조가 교사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조로 퇴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전교조⁶⁾는 본래 군부 독재에 맞선 교육민주화운동에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유서를 남긴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죽음에서, 교사도 노동자라는 노동자성에서 1,500명이 해직되고 107명이 구속되는 등 전대미문의

4) 사무총장이 직접 이유를 밝힌 것은 아니나, 정황상 그런 맥락으로 읽히고 있음을 표현한 문장임.

5) 이 조합원들이 훗날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을 세우게 된다.

6)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흐름속에, 전국교사협의회를 시작으로 1989년 5월 28일 창립했으나 정부의 탄압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법외노조’로 활동하며 정부와의 끊임없는 투쟁을 벌였다. 사학비리 척결, 촌지 근절 운동 등 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큰 지지를 얻었다. 1998년 민주노총의 노력과 국민들의 지지 속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둔 점을 문제 삼아 다시 법외노조로 통보받는다. 전교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해직 교사를 버릴 수 없다 정부와의 투쟁의 길을 선택한다. 투쟁의 결과 2020년 다시 합법노조로의 지위를 회복, 지금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해 조합비까지 인하한 전교조는 현재 퇴임 조합원들을 전교조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정부 탄압을 뚫고 우뚝 솟은 노동조합이다. 다음은 전교조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전교조 강령’과 ‘참교육실천강령’을 옮겨 놓은 것이다.

우리는 교육민주화 운동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육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참교육실천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한다.

1.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상을 추구한다.
1.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생활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성평등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인권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교육과정을 창조적으로 운영한다.
1. 우리는 서로 돕고 협동하는 학습의 원리를 구현한다.
1. 우리는 학생자치를 존중하고 돕는다.
1. 우리는 동료교사와 함께 연구하고 실천한다.
1. 우리는 학부모,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1. 우리는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투쟁한다.

전교조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위해 다음의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1.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 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1.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 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1. 우리는 자유·평화·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 교원 단체와 연대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지혜복 동지는 그 누구보다 전교조 강령과 참교육 실천 강령을 아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전교조 조합원인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주장하고 있는 각종 이유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투쟁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더 나아가 비방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되지 못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그냥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잃은 거다. 전교조가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 간다.

교육노동자 지혜복의 투쟁이 보여주는 것

2018년 용화여고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변진 스쿨미투를 기억한다. 그 후 6년이 지났지만 서울시 성범죄 교사의

65%가 여전히 교단에 있다는 기사글⁷⁾이 보도된 바 있다. 그 기사엔 2024년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인터뷰 글이 담겨있었다. 지혜복 동지가 해고된 후 나온 기사다. 기만이고 위선이다.

지혜복 동지는 우리에게 스쿨미투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학교 현장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그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하지만 전교조 서울지부는 현장의 고통 받는 학생들을 지우고 그 위에 갑론을박, 지혜복 교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홍보하기에 정신이 없었다. 교육청 또한 피해학생들의 고통은 뒤로한 채 지혜복 교사 징계 때리기에만 열중했다. 너무나 닳아버린 전교조와 교육청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지혜복 동지의 용기 있는 투쟁은 아직 가슴속에만 묻고 살아오고 있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다. 지난 14차 수요집회에서 기아화성 청소노동자 김경숙 동지의 발언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전해주었다. 또한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시민들이 보내준 뜨거운 지지와 응원은 잊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부터 대선 시기 전후까지 이준석의 소위 이대남을 앞세운 반페미니즘 선동정치가 팽배해 있던 상황에서 젠더 이슈를 꺼내는 것 자체가 위축될 수 있는 시대 흐름이었지만 지혜복 동지는 더욱 가열 차게 투쟁을 이어 나갔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본인 또한 여성이었기에 페미니스트 프로파간다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부정과 혐오의 공격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노동자 지혜복은 물러서지 않았다. 지혜복 동지 뒤에 있는 피해 여학생들을 생각하면 물러설 곳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지혜복 동지는 교육청 앞에 천막을 치고 삭발을 하며 끝까지 싸우고 있다.

진보교육감에 기대어 적당히 타협하고 편안한 정규직 교사의 길을 걸어가도 그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혜복 동지는 그럴 수 없었다. 학생들이 있었기에 더더욱 그랬겠지만 타협할 수 없다는 노동자 정체성 또한 크게 작동했을 것이다. 투쟁의 기억을 잃어버린 전교조를 견인이라도 하듯, 올곧게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지혜복 동지는 민원처리로 진보교육감과 교육 현장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는 전교조에게 일침을 날리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지혜복 결엔 말벌 동지들과 함께 연대하는 동지들이 있다. 어떤 이유도 없이, 조건 없이 그저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노동조합이 이 핑계 저 핑계만 대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뿔려버린 구멍을 말벌 동지들이, 타 노조 동지들이, 시민사회단체 동지들이 꼼꼼하게 메꾸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투쟁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연대의 힘으로 끝까지 투쟁!

무늬만 진보 교육감인 정근식 교육행정관료에 대한 기대하기는 그만두고 명확하게 책임을 묻자.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하지 않고 부당 전보에 부당 해고까지 당한 지혜복의 원직 복직을 위해 한결같

7) 2024.11.07. 여성신문 신다인 기자의 ‘스쿨미투 이후 6년, 서울시 성범죄 교사 65% 여전히 교단에’라는 제목의 기사글

은 목소리로 꾸준히 책임을 묻자. 여전히 진보 교육감 지키기에만 급급한 저들을 향해 똑바로 알려 주자. 우리의 투쟁으로. 구미에는 600일 고공 농성을 마치고 내려온 날 박정혜 세 글자를 인정한 사람들이 있었다. 박정혜 동지에게 뒤늦은 안부 전화를 걸어온 지인도 있었다고 했다. 내려오는 날 알았다고 투쟁기금을 전하고 싶다는 연락도 있었다. 600일 고공농성이었음에도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도 투쟁을 통해 아직 더 알려야 한다. 진보 교육감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꾸 묻고 알려주자.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는 전교조에 대한 기대를 멈추자. 명확하게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자. 우리의 투쟁을 통해 계속 시끄럽게 하자. 가만히 있지 못하게 우리의 투쟁을 올곧게 이어가자. 지난 전교조 대대에서 대의원들이 보여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연대와 지지는 거짓이 아니었다. 전교조를 흔들어 보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강고한 연대의 힘이다. 600일. 정말 대단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늘어나는 숫자는 우리의 멈추지 않는 연대의 힘을 확인해 주는 숫자이기도 하다. 지지 말고 끝까지 꾸준히 함께!

학교가 침묵하는 사이, 아이들은 무너졌습니다

용은중 (A학교 관련 학부모)

엄마,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이 한마디는 무력감을 느끼는 피해 학생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다른 피해자 부모들처럼, 저 또한 속수무책으로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졸업 후에도 동네와 학원에서 가해 학생들을 마주쳐야 했기에 쉽게 나설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학부모로서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라는 피해 학부모들의 글은 그 절박한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두려움에 짓눌린 아이들은 더 이상 사건을 표면으로 끌어올릴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토론회에 참석한다는 말을 듣고 저희 아이조차 "엄마 이름 걸고 안 하면 안 돼?"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비슷한 상황에서 그냥 참겠다는 아이들을 보며 너무 슬펐습니다.

성폭력에 무감각했던 학교

남녀공학인 이 학교는 수년째 한 반에 여학생이 6명, 남학생이 16명인 성비 불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선생님이 없는 시간에 교실과 운동장에서는 성희롱과 성폭력이 만연했습니다. 서너 명의 남학생 무리가 혼자 교실에 들어오는 여학생에게 외모 비하 발언을 하거나, 남자친구와 키스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기고 외모를 평가하거나, 귀에 대고 '섹스'라고 속삭이는 행동까지 반복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여학생 가방을 뒤져 생리대를 훔쳐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어떤 아이들은 '유난스럽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들의 다수는 지혜복 선생님이 이러한 실상을 파악하고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학교의 부실한 조사와 2차 가해

문제가 제기된 후, 지속적인 성희롱 가해 학생 두 명이 긴급 분리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하루 만에 교실로 복귀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듯, 피해를 신고한 여학생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담당했던 학생주임 교사와 관리자들은 이를 남녀 학생 간의 단순한 장난이나 해프닝으로 여겼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특별히 잘못된 게 없는데 여학생들이 예민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문제를 축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심각한 2차 가해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학생(O)의 진술 반복은 학교의 방어적인 태도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한 때 지혜복 선생님에게 가장 많은 피해 내용을 진술했지만, 친했던 남학생들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학교는 O학생의 반복을 방패 삼아 여학생들의 진술 전체를 '마음에 들지 않는 남학생들을 지목한 것'이라며 축소하려 했고, 이는 지혜복 선생님을 공격하는 논리로 활용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거짓과 은폐

2023년 12월 말, 학교는 피해 학생 학부모들에게 불분명한 이유로 다음 주 월요일에 방문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응하기 어려웠고, 나중에야 학교가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거짓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발 방지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서류상의 기록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에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불과 한 달 뒤인 3월에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운동부 학생이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은 여학생에게 '못생겼으니 마스크를 도로 쓰고 다니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일로 피해를 입은 한 학생(I)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고, 졸업 앨범에 사진도 넣지 않은 채 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학습권 침해

학교는 공익 제보자인 지혜복 선생님을 부당하게 전보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과 교사가 부족해졌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사회 과목 진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명백히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것입니다. 역사 선생님이 사회 과목을 가르치게 된 것은, 사회과 교사를 1명 더 많이 배치했던 김OO 전 학교장의 지침에 따른 부당한 조치였습니다.

무력감 속에 놓인 아이들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정의롭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고 기다렸지만, 시간만 흘렀고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이 우리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집단적인 반발을 보였고, 어떤 운동부 학생은 커터칼을 들고 다니며 위협했습니다. 학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차라리 가만히 있을걸 그랬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저희 아이조차 "엄마, 이 사건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선생님마저 학교에서 힘없이 전보되는 것을 본 아이들은 더욱 숨죽여 학교생활을 했고, 빨리 졸업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부당한 일이 생겨도 그냥 참고 적응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 또한 패배감을 내면화하고 오

랫동안 해왔던 학교 관련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부당함을 참고 침묵하는 것을 내면화하지 않도록, 공익 제보자이자 피해 학생들을 위해 애썼던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공익신고자를 전보시킨 것도 문제고, 사회과가 더 부족해져 학교와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도 참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부당한 일을 참고 침묵하는 것을 더 이상 내면화 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이자 피해학생들을 위해 애썼던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지혜복 선생님은 학생의 편에 선 공익제보자입니다. 해결을 위해 애쓴 지혜복 선생님을 꼭!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로서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해 주셨습니다. 학교는 제대로 된 조사 및 사과 등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과에 대한 통보는 형식상 문자 보내왔습니다. 그래놓고 모든 걸 다했다고 하는 건 너무 모순입니다."

"(지혜복 선생님은) 아이들 편에서 지지해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셨습니다. 졸업을 하였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고, 아이들의 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폭력 사안을 직시하라!!!"

지혜북도 정근식도 돌아가자!

성령 (전국청소년노동조합 사무총장)

“사회·역사 교과서에서도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익을 실현하는 집단”

나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다. 2024년, 내가 중학교 1학년일 때, 사회 교과서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익 집단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이익 집단은 정치 과정에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표출하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¹⁾ ‘이익 집단’ 즉, 노동조합과 관련한 내용은 올해 내가 배우고 있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나오기도 한다. “...노동자들은 점차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자본가 계급에 맞서기 시작하였다.”²⁾ 이처럼 중학교에서부터 배우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이다. 내가 알던 노동조합도 그런 줄 알았다. 언제나 노동자 편에 서며 노동권을 무시하는 사용자들과 싸우는 그런 조직인 줄 알았다. 근데 지금의 ‘전교조’를 보며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본인의 조합원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들의 투쟁을 무시하고 2차 가해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배운 노조는 잘못된 노조인가 싶었다.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욕하던 어용노조와 다른 것이 없는 게 아닐까?

“함께 만들었던 이들을 잊지 말아라”

전교조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만들어진 조직이다. 1980년대 전교조라는 조직이 꾸러지기 시작하며 여러 학생이 함께 참교육을 외치며 전교조를 지켜나갔다. 함께 단식 투쟁을 하며 참교육을 위해서 함께 했다. 그 당시 촌지 안 받는 선생님들과 함께하던 전교조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서 말하던 전교조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데 난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

옛날에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학교에서 진보적인 인권 동아리를 만들 때 전교조 교사가 있으면 너무 편하다.” 인권을 생각하던, 정의를 생각하던 전교조는 초심을 되찾기를 바란다.

“지지해 달라는 게 잘못된가요?”

전국청소년노동조합은 7월 1일 “전교조는 정근식 교육감의 산하 기관입니까?”라는 성명을 내고 전교조를 강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다. 비판한 이유는 전날 있었던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위원회의 결정이었다.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위원회는 지혜북 교사의 투쟁을 지지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이유는 “전보 결정 과정에서 부당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성폭력 신고로 인해 초래된 전보가 아니다, 조합이 승인하지 않은 출근 거부 투쟁을 지지하거나 지원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지지를 않았다. 이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쓰고 며칠 뒤, 전교조 서울지부 전 지부장이라

는 사람이 우리의 위원장을 통하여서 7월 1일에 낸 논평에 대해 의견을 보내왔다. 그 의견에는 지혜복 교사를 향한 공격과 허위정보 및 본인들의 조직만을 옹호하고 편파적인 의견들만 있었다. 또한, 청소년을 단순히 ‘미래 세대’로 보며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이 넘쳐났다. 아무리 전 지부장이라 해도 노조 내에서의 입지나 여러 직위가 있으므로 전국청소년노동조합은 이를 권력을 이용한 압박으로 해석하고 바로 긴급 규탄 성명을 작성하고 그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청소년에게도 지혜복 교사는 돌아와야 한다.”

청소년의 입장에서조차 지혜복 같은 교사는 필요하다. 학교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속해서 지혜복 교사를 공격한다면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 등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가 신고할 수 있을까. 누가 공익제보를 할 수 있을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의 영원한 아웃사이더 ‘홍세화’님은 ‘결 : 거침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은 소극적이고 정의는 언제나 지각한다.” 나는 이 말을 굳게 믿는다. 진실은 소극적이어도 밝혀질 것이다. 정의는 지각하더라도 언젠가는 도착할 것이다.

나는 전교조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전교조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이는 청소년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지혜복도 정근식도 모두 돌아가라! 물론 지혜복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고 정근식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1) 미래엔 중학 1 사회 교과서 185쪽 일부 내용 발췌
2) 비상 중학 1 역사 교과서 149쪽 일부 내용 발췌

구조적 성차별 속에서 A학교 투쟁의 의미와 과제

포괄적성교육의 필요성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학교 내 성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 필요

학생들의 성평등 인식(성별 간 격차가 큰 상황), 교실과 학교의 문화(경쟁, 공정, 각자도생)(온라인 놀이(혐오)문화의 일상화),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절차/과정/가치

예방

모두가 안전하게 포함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주력하자

공교육의 존재 자체의 의미와 목적을 재정립하자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포괄적성교육이 필요하다.

정치, 경제, 언론, 미디어의 메시지들 분석/해석/적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교대/사대에서 예비교사에게, 교사 연수를 통해 교사들에게, 교감/교장 자격시험 때와 연수 때 교육을 통해 교사를 위한 성교육/성평등교육/인권교육/미디어교육/다양성훈련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사후

종합적이고 확실한 절차를 마련하자

피해자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교사 혹은 학교가 아닌 중앙에서 전담처리 부서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학교 내 사안 처리 중 2차 가해/피해 우려와 두려움이 심각하다.

교육감과 교육청은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A학교 관련 양육자 메시지 모음

지혜복 선생님은
학생의 편에 선 공익제보자입니다.
해결을 위해 애쓰는 지혜복 선생님을
꼭!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학내 성희롱등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 -

안녕하세요 저는 A학교 성희롱 사건 피해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오랫동안 지혜복 선생님께서 부담함에 대해 투쟁 중이신 것은 알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은 피해 아이들과 가해 아이들이 현재 가까운 지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학원을 오가는 길에 마주치기도 하고, SNS를 통해 2차 가해라는 추가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A학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7:3 정도로 남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으로, 여학생과 여선생님을 향한 남학생들의 성희롱적 발언이 만연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신 지혜복 선생님께서는 피해학생들편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시려하시지만, 지혜복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해 용기내어주셨고, 아이들을 보호해주시려고 애써주셨고, 당시 아이들은 선생님이 함께 해주셔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제 아이는 지혜복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호해주시려고 하시다가 지금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습에 마음이 무겁고,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함에 죄송함을 느낍니다.

아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하는 학부모로서 앞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지혜복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아이들을 보호해주시려고 하셨고, 아이들이 겪어야했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용기내어 목소리 내어주셨던 분이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지혜복 선생님께서 차가운 길바닥이 아닌 사랑하는 아이들 곁으로 되돌아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관원서

지혜로운 교사는 공익제보자로서 학생들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해 줍니다. 학교는 제각각 교사 및 사관 등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격화에 대한 통제는 해산상
문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모든것 다해라고
하는것 너무 모순입니다.

교육 기관은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혜로운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행 성폭력 사건을
직시하라"

A학원 학부모

안녕하세요. 지혜북교사님이 근무했던

A학교의 피해학생 학부모입니다.

저희아이가 남학생들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았을때. 아이를 편에서 지지해주시고.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셨습니다.

지금은 졸업은 하였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성희롱사건이 일어나고. 아이들의 교육이나

학교생활 예방대책을 이루어지지 않고있는데

동생도 같은학교에서 언니와 똑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적시한 문제해결과 예방이 힘써야 합니다

또한. 지혜북교사님은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셨고. 공익제보를 하신분이니.

꼭직 해주세요 마땅합니다